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4년 03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03월 27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단,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4년 03월 20일)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L975)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신흥국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 **주식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위험, 신흥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 누적수익률과의 괴리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TIGER차이나CSI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CSI 3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	0.63	0.001	-	0.68	70	143	219	381	85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3.01~'24.02.29	**'22.03.01~'24.02.29**	**21.03.01~'24.02.29**	**19.03.01~'24.02.29**	
투자신탁	2014.01.27	-16.16	-13.48	-11.75	1.68	6.01
비교지수		-17.15	-14.37	-12.4	0.67	4.71
수익률 변동성		15.184	16.6567	16.3294	17.9949	20.6989

(주1) 비교지수: CSI 300 지수(원화환산) * 100%

MIRAE ASSET 미래에셋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4.02.29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파생형)(단위: %)				운용 경력연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민석	1986	(책임) 본부장	35개	103,520억원	1.50	-3.74	5.57	-3.60	11년6개월
이종민	1991	(부책임) 매니저	24개	16,546억원	6.07	-9.88	5.57	-3.60	0년 4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 손익 구조, 시나리오법에 의한 손익변동, 최대손실금액등)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table>
<tr><td></td><td colspan="3"><table>
<tr><td></td><td>다.</td></tr>
<tr><td>환율변동
위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td></tr>
</table></td></tr>
<tr><td>매입방법</td><td>-개인투자자: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수
-법인투자자: 장내매수, 설정청구</td><td>환매방법</td><td>-개인투자자: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도
-법인투자자: 장내매도, 환매청구</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table>
<tr><td>산정방법</td><td>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인터넷 홈페이지</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신탁</td><td>투자신탁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 과세 적용</td><td>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td></tr>
<tr><td>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1577-1640 /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제한을 두지 않음.
효력발생일	2024년 03월 27일	**존속기간**	정해진 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6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알림]

CSI300 지수는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CSI)에 의해 산출됩니다. CSI는 지수와 관련된 자료의 정확도 또는 완성도에 대하여 고객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보장, 표현 또는 암시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CSI는 이 정보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ISCLAIMER]

CSI300 Index is calculated by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 (CSI). CSI does not make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to any of their customers or anyone else regarding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any data related to the Index. All information is provid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CSI accepts no liability for any errors or any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information"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확 인 서

우리는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발행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 이사로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증권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MIRAE ASSET 미래에셋

2024년 03월 27일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자산운용㈜ 대 표 이 사 이 준 용 (서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신고업무담당이사 조 하 나 (서명)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일 경우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중 중국 상해 및 심천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본토 주식 및 관련 파생생상품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획득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투자한도, 외화환전 및 해외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리규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 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A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 이익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과세 금액은 이후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준가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하는 투자자 혹은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에게 소급 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AL97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모자형투자신탁는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및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법인투자자에 한하여 지정참가회사에서 모집 청구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예정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상장요건

- 규모요건 :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기초자산 요건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거래소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 자산의 구성 요건 : 자산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함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②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16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규정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함.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 등의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은 이 투자설명서의 작성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 TIGER 차이나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AL97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4.01.27	최초설정(한국거래소 상장: 2014.02.17)
2014.10.20	설정단위 변경(600,000좌 → 200,000좌)
2015.06.15	보수 인하
2015.09.0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미래에셋펀드서비스)
2020.04.24	보수변경(집합투자업자 보수: 0.49% -> 0.50%, 지정참가회사 보수: 0.05% -> 0.04%)
2021.05.18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파생결합증권) 삭제
2021.11.17	설정 단위 변경(200,000좌 → 50,000좌)
2022.01.19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장외파생상품, 금리스왑거래) 삭제
2022.04.01	보수 변경(집합투자업자 보수: 0.50% → 0.53%, 지정참가회사 보수: 0.04% → 0.01%)
2023.01.16	투자대상자산(환매조건부매수) 추가
2023.08.25	투자신탁 명칭 변경(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래에셋 TIGER차이나CSI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3.11.15	운용역 변경(오민석(책임), 이가현(부책임) → 오민석(책임), 이종민(부책임))
2024.03.27	보수 변경(집합투자업자 보수: 0.53% → 0.539%, 지정참가회사 보수: 0.01% → 0.00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오민석	1986	본부장	11년6개월	(12년~13년) 한국투자공사 채권운용팀 (13년~16년) 키움투자자산운용 Global운용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4.02.29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파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민석	35개	103,520억원	1.50	-3.74	5.57	-3.60	-	-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종민	1991	매니저	0 년 4 개월	(17 년~22 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부문 (22 년~23 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4.02.29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파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종민	24 개	16,546 억원	6.07	-9.88	5.57	-3.60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오민석	1986	본부장	11년6개월	(12년~13년) 한국투자공사 채권운용팀 (13년~16년) 키움투자자산운용 Global운용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4.02.29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파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민석	35개	103,520억원	1.50	-3.74	5.57	-3.60	-	-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종민	1991	매니저	0 년 4 개월	(17 년~22 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부문 (22 년~23 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4.02.29)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파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종민	24 개	16,546 억원	6.07	-9.88	5.57	-3.60	-	-

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4.01.27 ~ 2019.03.31	윤주영
2019.04.01 ~ 2020.03.25	윤주영(책임), 서기훈(부책임)
2020.03.26 ~ 2020.04.29	오민석(책임), 정상현(부책임)
2020.04.30 ~ 2023.11.14	오민석(책임), 이가현(부책임)
2023.11.15 ~ 현재	오민석(책임), 이종민(부책임)

라.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14.01.27 ~ 2019.07.16	윤주영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19.07.17 ~ 2020.03.25	윤주영(책임), 서기훈(부책임)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20.03.26 ~ 2020.04.29	오민석(책임), 정상현(부책임)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20.04.30 ~ 현재	오민석(책임), 이가현(부책임)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4.01.27 ~ 2019.07.16	윤주영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9.07.17 ~ 2020.03.25	윤주영(책임), 서기훈(부책임)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0.03.26 ~ 2020.04.29	오민석(책임), 정상현(부책임)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1.04.30 ~ 2023.11.14	오민석(책임), 이가현(부책임)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3.11.15 ~ 현재	오민석(책임), 이종민(부책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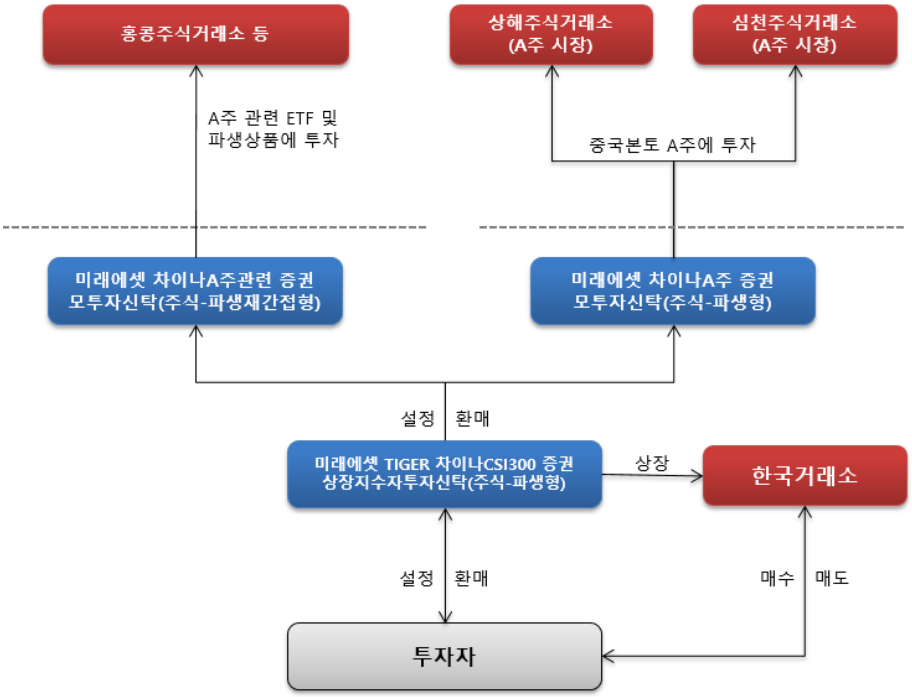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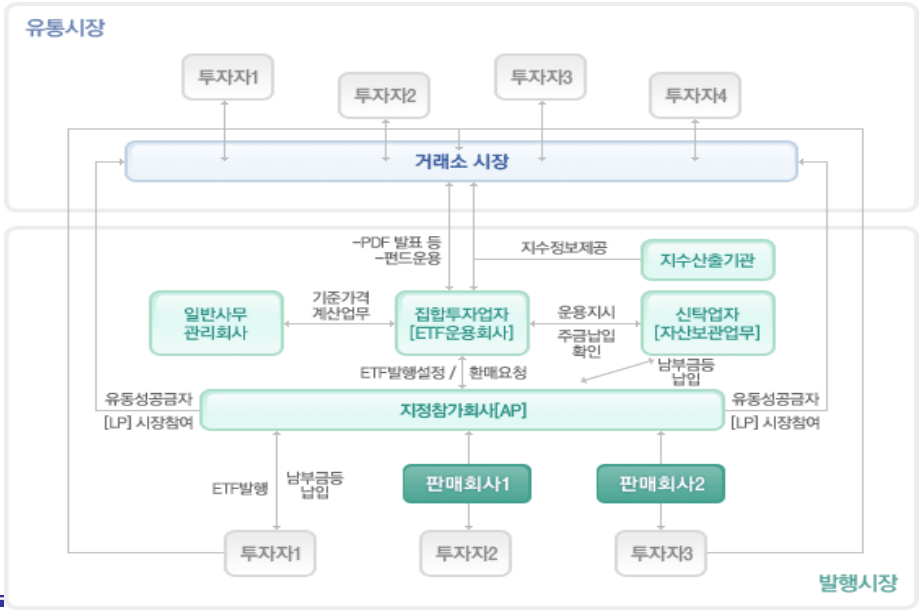

ETF는 기준가격에 따라 설정 해지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ETF수익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함께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며, 설정해지를 위한 특정단위로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을 원하는 경우 "AP"라고 불리우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ETF 설정에 필요한 현금등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ETF수익증권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ETF 수익증권을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 / 매수호가의 경합으로 ETF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LP라고 불리우는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 ETF의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집합투자업자	ETF 운용 주체 지수추적을 위한 펀드자산의 설계 및 구성종목 교체
지정참가회사(AP)	ETF의 설정 및 환매신청 창구 역할 주식바스켓(CU) 구성 의무 ETF와 현물주식 시장간의 차익거래 수행
유동성공급자(LP)	AP역할 동시 수행 시장에서 호가제공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역할 수행 (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 체결기관에 한함)
신탁업자	ETF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ETF 사무처리 업무 수행(NAV계산, ETF 설정, 환매 정산금액의 산출)
투자자	ETF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ETF 설정 및 환매(법인투자자)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신탁 / 자신탁	미래에셋 차이나 A 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 차이나 A 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 TIGER 차이나 CSI300 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90% 이상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CSI 3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합산하여 90% 이상 주1)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며 중국본토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③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④	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하며, 모투자신탁을 통해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주2)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3)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CSI(China Securities Index Co., Ltd.)가 발표하는 "CSI 3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기초지수 추종을 위해 중국본토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중국본토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부터 중국본토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한도 소진일까지는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운용되며 투자한도 소진일 후에 추가설정이 있는 경우 중국본토 주식관련 ETF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다만, 투자한도 소진일 이후에라도 환매 등에 따라 투자한도 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추가설정 시에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본토 주식 외의 대체수단(CSI 300 지수선물, FTSE China A50 지수선물 및 중국본토 주식관련 ETF 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순자산의 50%미만으로 하며 QFII를 지속적으로 추가신청하여 중국본토 주식 현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QFII 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급격한 추가설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수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체수단의 투자비중이 이 투자신탁순자산의 50%이상 일시적으로 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50%이상 일시적 초과 상태에서 QFII 신청이 가능한 시점 도래시 즉시 QFII를 추가신청하여 중국본토 주식 현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모투자신탁을 통해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는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① 이 투자신탁은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로부터 QFII 자격을 부여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 3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하여, 중국본토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70% 이상 투자하되 중국본토 A주식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또한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중국본토 주식관련 파생상품(CSI 300 지수선물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CSI 300 지수(원화환산)	합산하여 90%이상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 3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하여, 중국본토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CSI300 Index ETF 등) 및 중국본토 주식	

	관련 지수 선물(FTSE China A50 Index 선물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② 비교지수: CSI 300 지수(원화환산)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지수 : CSI 300 지수(원화환산)

- 산출기관 : China Securities Index Co., Ltd.
- 지수개요: 중국본토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유동성·거래량·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00종목으로 구성
- 산출방식 :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방식
- 정기변경: 매 6개월(1월초, 7월초)
-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04.12.31 = 1,000pt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ETF)의 기초지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주소	비 고
지수관련정보	http://www.csindex.com.cn/en	지수발표기관(CSI)
	http://www.tigeretf.com	TIGER ETF 전용 홈페이지
	http://data.krx.co.kr	한국거래소 ETF 전용 홈페이지
	HTS(Home Trading System)	증권사 시스템
	http://www.google.com/finance?q=SHA%3A000300&ei=jHE9UKCANMitkAWYSw	Google Finance 홈페이지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기초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중 부도 가능성,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 종목군을 구성하고, 투자대상 종목군 중에서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Sampling) 방식으로도 투자합니다. 이 경우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 달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투자증권의 대여 등을 동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기타 이상과 같은 사유들에 준하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과 때로는 추적오차의 정도가 상당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초지수의 상한가중치에 따른 종목당 최대편입비 초과분에 대한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상장수수료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정(正)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지수 구성종목의 정기 또는 특별변경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

구 분	세부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익구조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 투자자 공시 사항

(1) 법규 적합성 공시

본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주요한 투자수단인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개설된 중국예탁결제원(CSDCC)의 증권계좌는 중국의 관련 감독기관과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여 중국 현지 수탁은행에 의하여 관리되고, 집합투자업자와 본 상장지수투자신탁이 투자하는모투자신탁의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내 외화 유동성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현금계좌는 중국의 감독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중국 현지 수탁은행에 개설되어 중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와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중국현지 수탁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관련 감독규정에서 지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투자신탁의 중국 현지 수탁은행은 중국의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증권계좌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현금계좌 내에 보관되어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계정과 철저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며 본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중국 현지 수탁은행 및 증권중개기관은 매매를 실행함에 있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의 자산 및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매매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은 중국현지 수탁은행으로 하여금, 수탁은행의 고유자산과 QFII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받은 자산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합투자업자의 다른 투자신탁의 자산과도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본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중국 현지 수탁은행 및 증권중개기관은 매매를 실행함에 있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의 자산 및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매매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의 수탁은행은 집합투자업자를 위하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증권계좌 내의 모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체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보유한 현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현지 수탁은행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혹은 증권중개기관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해산될 경우에 처하더라도 중국현지의 증권계좌 및 현금계좌 내 보유한 자산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혹은 증권 중개기관의 청산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수탁은행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해산될 경우에도 본 투자신탁의 재산은 해당 현지 수탁은행의 청산절차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다만, 현금계좌 내 보유한 자산의 경우는 증권계좌 내 보유자산과는 달리 현지 수탁은행의 청산 절차 이행시 청산대상 자산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본 투자신탁은 해당하는 현금계좌의 예금 분에 대하여 무담보 채권자가 됩니다.

※ 본 투자신탁의 현지 수탁은행의 개요
- 은행명(영문) : 중국공상은행(ICBC,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imited)
- 대표이사 : Yi Huiman
- 본점소재지 : No.55 FuXingMenNei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P.R.C
- 웹사이트 :http://www.icbc.com.cn

(2) QFII 의 자금유출입 제한과 그에 따른 설정환매와 관련된 운용에 대한 사항 공시

QFII 를 통한 중국본토주식(이하 "A 주") 투자는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라 투자됩니다. 중국정부는 QFII를 통한 A 주 투자자금의 유출입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의 설정/환매 자금의 유출입 역시,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투자신탁은 최초설정 후 QFII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QFII 한도 소진일로부터 3 개월 혹은 QFII 한도 승인일로부터 6 개월되는 시점부터 3 개월)까지 투자자금의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자금유출입 제한은 기초지수 대비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설정/환매에 따라 본 투자신탁에서 A 주의 투자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설정과 환매가 발생했을 때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제한에 따른 운용상의 제약을 방지하고자, 대체자산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의 경우 : 추가설정에 따라 자금이 유입된 경우,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적하는 해외파생상품과 외국거래소에 상장

된 ETF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본토에서의 자금 입출금이 가능한 시기에 QFII 투자한도가 여유가 있을 경우, 이 대체자산과 A 주간 교체 매매를 실행하고, A 주를 주로 보유하는 것을 기본 운용원칙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만일 QFII 투자한도가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QFII 한도의 추가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QFII 한도의 추가확보가 되는 시점까지는 대체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기초지수와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 환매의 경우 : 일부환매의 경우, T+2 일 공시기준가로 환매대금을 확정하기 위해 기초지수와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A 주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대체자산을 매도하여, 환매대금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후 중국본토에서의 자금 입출금이 가능한 시기에 준비된 환매대금을 회수하여 일부 환매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유출입의 제한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환매의 절차는 신탁계약서 제28조제7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환매 절차는 본 투자설명서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QFII 의 위험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른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자격을 제한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 A 주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심지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 A 주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발생 1 개월내에 자산을 환매하고 개설한 계좌를 폐쇄해야 하고, 투자한도도 이와 동시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중국 A 주시장투자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자격 취소, 계좌폐쇄, QFII 한도 무효 또는 취소(축소)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투자한도 승인일로부터 6 개월내에 투자원금을 납입해야하고, 최초 투자원금이 미화 2 천만불 이상을초과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자격이 취소될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화송금금지 기간 이후 중국내 잔존 투자원금이 미화 2천만불에 미달할 경우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자격이 취소될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또한 QFII 가 관리하는 증권계좌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중국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투자한도의 감소나 자격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및 처벌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투자한도를 양도하는 등 외화 불법사용행위
- ► 수탁은행 또는 중국정부에 허위정보나 자료 제공
- ► 규정에 반하여 투자금의 외화결제 또는 외화를 매도/매입한 경우
- ► 중국정부가 요구한 자금외화결제 및 역내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중국정부가 정한 규정에 반한 기타 행위
- ► 신탁재산 내 구성종목 중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이 판단하는 기타사항(구체적인 해당규정은 없으며, 개별사안 별로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름)에 의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자격 및 투자한도를 박탈당할 수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과 유가증권시장내의 상장 및 거래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각종 규제사

항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준법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자격이 취소될 경우, 지체없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공시할 것이며, 투자자가 이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FII 자격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국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지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중국 세제 위험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A 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차이나 A 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대해 투자신탁의 투자 이익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이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펀드 가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급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하는 투자자 혹은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에게는 소급 과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FII 지위 축소 또는 제한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QFII 로서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부터 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심지어 QFII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본토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 서류 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정책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Quota)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된 시점[투자한도(Quota)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 개월까지 투자한도(Quota) 전액을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6 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 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고 있

	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을 주 1 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환매주기 이외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월간 누적 해외송금한도를 전년도 말일기준 QFII 투자자금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대금 수령기간은 일반적인 환매대금 수령기간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매대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	투자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금액은 한국으로 송금하는 날까지 중국본토에 외국통화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환율변동은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투자자의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달러/위안화 관련 파생상품 또는 달러/원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환헤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헤지가 되지 않거나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가격 변동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기초지수와 다른 자산 또는 다른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정 비율 투자, 롤오버시 종가와 장중매매가의 차이,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최소투자규모 제한으로 인한 설정 위험	QFII 한도 획득 후 중국본토 A 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자금 규모가 미화 2 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설정금액이 미화 2 천만 달러에 미달 시, 그 금액을 충족할 때까지 중국본토 A 주 투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최종 설정금액이 미화 2 천만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변경 또는 중단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전부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일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또는 선물과 같이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가장 최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을 근거로 합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휴일 혹은 영업일 차이로 인해 해외거래소가 개장하지 않음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지연 반영되거나 기초자산의 변동을 실제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일이 일치하지 않는 날에는 ETF 나 선물이 중국본토 주식시장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거래소의 영업일 차이에 따른 실시간순자산(iNAV) 왜곡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본토, 홍콩, 싱가폴 등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선물,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각기 다른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가장 최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휴일 및 영업일 차이로 해외 거래소가 개장하지 않음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지연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기초지수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ETF 의 기준가격에 기초지수와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를 계산함에 있어, 해외 거래소의 휴장일에 따라 그 산출되는 가격이 실제 기초자산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자는 실제 기초자산의 가격과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기초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 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TF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ETF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F 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ETF 를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 합니다.
개인투자자 투자자금 회수곤란 위험	개인투자자는 ETF 를 보유하게 되면 당해 ETF 가 상장된 거래소(例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ETF 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ETF 의 거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께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규모 미달에 따른 해지 위험	적격투자자(QFII)가 투자 자금을 중국본토로부터 해외로 회수하여, 인민폐 계좌와 외환 계좌의 잔액이 미화 2 천만 달러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자산을 현금화하고 외환 계좌 및 인민폐 계좌를 폐지해야 하며, 취득한 투자한도(Quota)도 동시에 취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계좌 잔액은 각 투자한도별 잔액이 아닌 해당 적격투자자의 전체 투자한도 계좌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며, 당사가 부여받은 전체 투자한도의 계좌잔액 합산액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유동성 위험	중국본토 상장 ETF 중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ETF 의 기초자산 구성종목 중 중국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본토 상장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관련 과세 위험	중국본토에 상장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한시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중국과세당국이 과세를 결정하게 되면 이 투자신탁의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준비금 적립 등과 관련된 처리 방식은 중국과세당국의 결정 및 감독 법규 준수, 그리고 수익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가격괴리 위험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 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장기간 제한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부진 위험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에도 당해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투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은 다른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활발하지 못한 경향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 3 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 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변동성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표준편차)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폭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17.19%**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

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	1 (매우 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 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수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에서 설정을 통한 매입]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1) 설정단위 (Creation Unit)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 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하는 경우에는 설정을 청구하는 날(이하 "설정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 익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교체기간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 신탁계약서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및 제4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 상기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의 설정절차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표]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의 정산 및 ETF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서확정 및 신탁업자에게 납부금등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 구성내역 발표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일괄

	(홈페이지, 거래소등)			예탁에 의한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입확인

나. 환매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사항

가. 수익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을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 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상기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나'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나' 내지 '마'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사. 상기 '나' 내지 '바'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

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 익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매 환매신청구간 시작일로부터 매 환매신청구간 종료일까지 환매청구시 : 매 환매신청구간 종료일로부터 제6영업일. 다만, 환매신청구간은 매주 첫번째 영업일로부터 매주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구간으로 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지급
-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송금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순연하여 적용

아. 위 '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이 최초설정일로부터 인출제한기간[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투자한도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되는 시점(투자한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투자한도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기간. 이하 같다] 종료일까지인 경우, 인출제한기간이 종료되는 차주 첫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환매대금 지급일이 해당 투자국가의 휴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이날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상기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환매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 상기 '사'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상기 '가' 내지 '차'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사'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 상기 '카' 규정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 상기 '가' 내지 '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기간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및 제4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상기 '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표]

	T-1	T	T+1	T+2	환매대금지급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인수도명세 확정	투자자계좌에서 수익증권인출 및 자산입고
집합투자업자	포트폴리오 납입자산통보 (홈페이지, 거래소 등)	환매내역 확인 및 승인/ 정산내역 계산			투자신탁 일부해지
한국예탁결제원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3)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나.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상기의 환매 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에 동 기준가격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기준가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방문하시어 기준가격을 요청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게시·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예상배당금의 추정은 증권사 추정 예상배당금과 당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
비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비상장지분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 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함.
외화표시상장증권	외화표시 상장증권은 당해 증권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최종시가에 의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다만 그러한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타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거나 매각이 제한되는 등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투자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 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용(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투자신탁	0.539	0.001	0.05	0.04	0.63	0.05	0.68	-	0.68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단, 최초보수계산기간의 매 3개월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보수계산기간은 그날의 익일부터 매 3개월을 의미합니다)						사유 발생시		

*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입니다.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227,806
금융비용	-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주식 종류	투자기간 / 구 분	1 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	143	219	381	8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0	143	219	381	85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해외 투자자산의 안전한 보관등을 위해 이용하게되는 자산보관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등)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지급기준일 :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③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이란?**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신탁회계

기간 중에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환금등의 지급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현금화하여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기한 : 신탁계약해지 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지급 순자산가치 : 상환금을 지급하는 직전일의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
- 자산의 형태 : 당해 잔존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 대상 수익자 : 신탁계약해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상환금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신탁계약해지 기준일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 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등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결산시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수익자가 이익을 분배받을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결산시 배당소득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매수후 결산 및 분배가 있었던 경우는 직전 결산 및 분배 직후를 의미)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단, 배당소득금액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환매(매도)시 배당소득금액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매도 및 해지(해산)(이하 "환매 등"이라 함)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매도시 배당소득금액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

▶ 환매시 배당소득금액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

= 매도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매수시(매수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세표준기준가격 + 투자자별 과세유보 금액***

** 실제 매매차익

= 매도 시점의 매도금액 – 매수취득금액 + 투자자별 과세유보 금액

*** 투자자별 과세유보금액

= 직전 결산 및 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 2010년 7월 1일 이전 매수하여 그 이후 매도하는 경우 2010년 7월 1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③ 기타 사항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ETF를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ETF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합니다.(단, 같은 날 매도되는 ETF는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

* 이동평균법: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 차이나A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주3)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및 파생상품	70% 이상	-주식: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다만, 중국본토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	채 권	3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자산 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 음	3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⑥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⑦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⑧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④, ⑥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⑨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⑩	단기대출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 매수주3)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1)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4)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④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⑤~⑧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주1)	적용 제외
①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 (예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④	집합투자 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	최초설정일

		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⑥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⑦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⑧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⑨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 ⑦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로부터 QFII 자격을 부여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 3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하여, 중국본토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70% 이상 투자하되 중국본토 A주식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중국본토 A 주식이란?

중국 증권거래소의 A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하며 상해증권거래소 및 심천증권거래소에 각각 A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중국 내국인 및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만이 투자가 가능하지만 중국 관련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FII란?

중국 본토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적격 기관 투자자를 말하며 CSRC(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QFII 자격을 얻게 되면 SAFE(중국외환관리국)으로부터 중국 투자에 대한 한도(Quota)를 받게 되며 QFII는 이 Quota 내에서 중국 주식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2008.7.30 CSRC로부터 QFII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2010.07.22 SAFE로부터 1억 USD Quota 및 2013.05.03 SAFE로부터 1억 USD Quota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② 또한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중국본토 주식관련 파생상품(CSI 300 지수선물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 분	CSI 300 지수선물
개요	중국본토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30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중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CSI 3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선물
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CFFEX, China Financial Futures Exchange)
거래통화	CNY
거래시간 (한국 시간)	오전장: 10:15 ~ 12:30, 오후장: 14:00 ~ 16:15 (최종거래일 오전장: 10:15 ~ 12:30, 오후장: 14:00 ~ 16:00)
최종거래일	계약월 3번째 금요일(휴일일 경우 익일)
가격제한폭	전일가격 대비 상하 10%

③ 비교지수: CSI 300 지수(원화환산)

<CSI 300 지수 :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가 작성하여 발표>

중국본토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의 선별된 우량주 300종목을 구성하여 지수화한 CSI 300 지수는 중국본토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④ 주요 투자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1, 십억 US$)	17,458			인구 (2022년 추정, 만 명)	141,053
GDP 성장률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 (2021년, 십억 US$)	3,167.7
(YoY, %)	3.6	3.6	17.5	수입 (2021년, 십억 US$)	2,678.9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 분	세부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 미래에셋 차이나A주관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주3)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50% 초과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다만, 중국본토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 식	4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 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⑧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해당하는 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주1), 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⑤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⑥~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주1)	적용 제외
①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동일종목 투자 (예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④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	

		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⑥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⑦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⑧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⑨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 ⑦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3) 다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

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주4)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CSI 3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하여, 중국본토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CSI300 Index ETF 등) 및 중국본토 주식관련 지수 선물(FTSE China A50 Index 선물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 적절한 대체지수의 출현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ETF로 확장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KINDEX 중국본토 CSI300 (168580)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
	설정일 및 소재지	2012 년 11 월 29 일 / 한국거래소
	주요 투자대상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목적 및 전략	CSI300 지수의 구성종목인 중국 A 주에 주로 투자하여 CSI300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
	벤치마크	CSI 300 Index
China AMC CSI 300 Index ETF (3188 HK)	집합투자업자	China Asset Management
	설정일 및 소재지	2012 년 10 월 26 일 / 홍콩거래소
	주요 투자대상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목적 및 전략	CSI300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해당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
	벤치마크	CSI 300 Index
iShares CSI300 A-share Index ETF (2846 HK)	집합투자업자	iShares(Black Rock)
	설정일 및 소재지	2009 년 11 월 18 일 / 홍콩거래소
	주요 투자대상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목적 및 전략	CSI300 지수의 구성종목인 중국 A 주에 주로 투자하여 해당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
	벤치마크	CSI 300 Index
WISE CSI 300 China Tracker ETF (2827 HK)	집합투자업자	BOCI-Prudential Asset Management
	설정일 및 소재지	2007 년 7 월 17 일 / 홍콩거래소

	주요 투자대상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목적 및 전략	CSI300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해당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되고 있음
	벤치마크	CSI 300 Index

③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지수 설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 적절한 대체지수의 출현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지수선물로 확장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SGX FTSE China A50 Index 선물**
개요	- 중국 A-Shares 시장 역외 상장 선물 - 싱가폴증권거래소 및 홍콩증권거래소에 등록된 A-Shares ETF 및 CSI300 선물과 높은 상관 관계 - 모든 SGX 회원사 및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
거래소	싱가폴증권거래소(SGX)
거래통화	USD
거래시간 (싱가폴 시간)	본장: AM 9:00 ~ PM 3:30 전산장: PM 4:10 ~ AM 2:00
결제월	연속 2개월 및 1년 이내 3, 6, 9, 12월
최종거래일	결제월 마지막 두번째 영업일
가격제한폭	전일 정산가격 대비 상하 10% 및 15% (제한폭 도달 시 10분 휴장) 휴장 후 장 종료까지 가격 제한폭 없음 최종거래일 거래 종료를 위해 가격 제한폭 없음
틱 사이즈	$5
증거금	약 6~7% 수준

④ 비교지수: CSI 300 지수(원화환산)

<CSI 지수 :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가 작성하여 발표>

중국본토 시장(상해 및 심천 거래소)의 선별된 우량주 300종목을 구성하여 지수화한 CSI 300 Index 는 중국본토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⑤ 주요 투자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1, 십억 US$)	17,458			인구 (2022년 추정, 만 명)	141,053
GDP 성장률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 (2021년, 십억 US$)	3,167.7
(YoY, %)	3.6	3.6	17.5	수입 (2021년, 십억 US$)	2,678.9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 분	세부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8기 (21.01.01 ~ 21.12.31)	적정
9기 (22.01.01 ~ 22.12.31)	적정
10기 (23.01.01 ~ 23.12.31)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 목	10 기('23.12.31)	9기('22.12.31)	8기('21.12.31)
운용자산	188,342	202,037	215,280
증권	186,734	199,290	209,35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607	2,747	5,924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0	2,686	2,522
자산총계	188,343	204,723	217,80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46	2,503	1,839
부채총계	1,846	2,503	1,839
원본	117,250	109,250	89,75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69,247	92,970	126,213
자본총계	186,497	202,220	215,963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0 기('23.01.01~'23.12.31)	9기('22.01.01~'22.12.31)	8기('21.01.01~'21.12.31)
운용수익	-28,240	-44,529	32,547
이자수익	46	23	24
배당수익	0	2,684	2,520
매매/평가차익(손)	-28,286	-47,239	30,001
기타수익	0	1	0
운용비용	1,506	1,292	1,933
관련회사보수	1,393	1,193	1,786
매매수수료	3	2	3
기타비용	110	96	142

당기순이익	-29,746	-45,822	30,614
매매회전율 (%)	78	48	66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10기 0 백만원, 9기 0 백만원, 8기 0 백만원 발생)

※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10기 0 백만원, 9기 0 백만원, 8기 0 백만원 발생)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 목	10 기('23.12.31)	9기('22.12.31)	8기('21.12.31)
운용자산	188,342	202,037	215,280
증권	186,734	199,290	209,356
주식	0	0	0
ETF	0	0	0
채권	0	0	0
매입어음	0	0	0
수익증권	186,734	199,290	209,356
외화유가증권	0	0	0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0
ELS	0	0	0
ELW	0	0	0
DLS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부동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607	2,747	5,924
예금	1,607	2,747	5,924
외화예금	0	0	0
CD	0	0	0
정기예금	0	0	0
위탁증거금	0	0	0
청약증거금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콜론	0	0	0
환매조건부채권	0	0	0
기타자산	0	2,686	2,522

미수이자	0	1	1
미수배당금	0	2,684	2,520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0	0
선물정산미수입금	0	0	0
선납(선급)원천세	0	0	0
기타	0	0	0
자산총계	188,343	204,723	217,802
운용부채	0	0	0
매도유가증권	0	0	0
미지급주식	0	0	0
미지급채권	0	0	0
미지급ETF	0	0	0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0
기타부채	1,846	2,503	1,839
미지급보수	329	291	369
미지급해지금	0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미지급원천세	0	0	0
기타부채	1,517	2,211	1,469
부채총계	1,846	2,503	1,839
원본	117,250	109,250	89,75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69,247	92,970	126,213
당기순이익	0	0	0
감자차익/차손	0	0	0
자본총계	186,497	202,220	215,963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 목	10 기('23.01.01~'23.12.31)	9기('22.01.01~'22.12.31)	8기('21.01.01~'21.12.31)
운용수익	-28,240	-44,529	32,547
투자수익	46	2,709	2,545
이자수익	46	23	24
배당수익	0	2,684	2,520
기타수익	0	1	0
매매이익	5,429	31	30,004
주식매매이익	0	0	0
파생상품매매이익	0	0	0

채권매매이익	0	0	0
외환거래이익	0	0	0
유동자산매매이익	0	0	0
ETF매매이익	0	0	0
수익증권매매이익	5,429	31	30,004
기타매매이익	0	0	0
매매손실	33,715	47,270	2
주식매매손실	0	0	0
파생상품매매손실	0	0	0
채권매매손실	0	0	0
외환거래손실	0	0	0
유동자산매매손실	0	0	0
ETF매매손실	0	0	0
수익증권매매손실	33,714	47,270	2
기타매매손실	0	0	0
운용비용	1,506	1,292	1,933
위탁보수비	1,171	989	1,417
판매보수비	22	33	113
수탁보수비	110	94	141
사무관리보수비	88	75	113
자문보수비	0	0	0
매매수수료	3	2	3
기타비용	110	96	142
당기순이익	-29,746	-45,822	30,614
비용	35,221	48,563	1,935
수익	5,475	2,741	32,549
천좌당 순이익(원)	-1,255,056	-2,541,142	1,292,83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1.01.01~ '21.12.31	29.2	324,103	5.5	65,053	16.7	203,808	18.0	185,349	0
'22.01.01~ '22.12.31	18.0	215,963	7.4	72,470	3.5	40,391	21.9	248,042	0
23.01.01~' 23.12.31	21.9	202,220	18.7	141,791	17.1	165,043	23.5	216,243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이후
(기간)	23.03.01~'24.02.29	22.03.01~'24.02.29	21.03.01~'24.02.29	19.03.01~'24.02.29	설정일~ 24.02.29
투자신탁	-16.16	-13.48	-11.75	1.68	6.01
비교지수	-17.15	-14.37	-12.4	0.67	4.71
수익률 변동성	15.184	16.6567	16.3294	17.9949	20.6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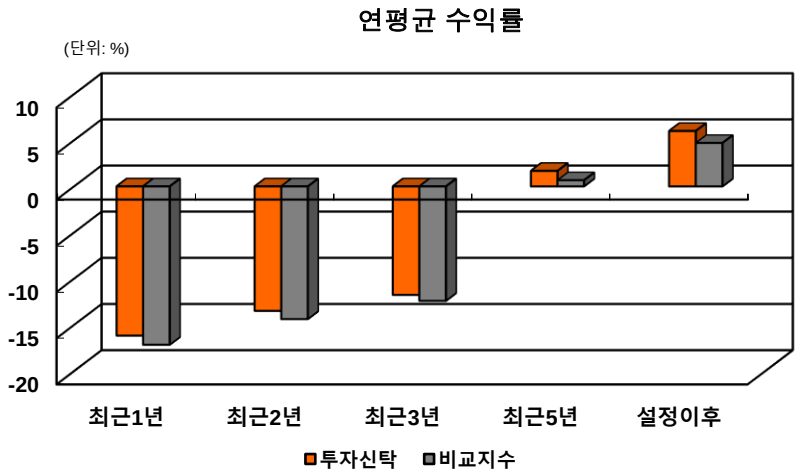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

연도	최근 1 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기간	23.03.01~'24.02.29	22.03.01~'23.02.28	21.03.01~'22.02.28	20.03.01~'21.02.28	19.03.01~'20.02.29
투자신탁	-16.16	-10.75	-8.19	41.48	11.82
비교지수	-17.15	-11.52	-8.32	39.24	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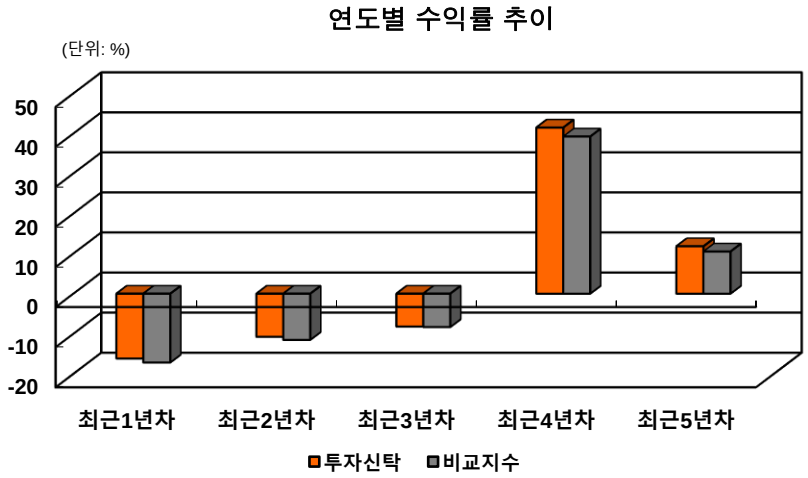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비교지수는 "CSI 300 지수(원화환산)"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만, %, 2023.12.31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CN1(CNY(거래증거금))	0	0	0	0	0	0	0	0	0	117	0	1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6	0.00	
CNH(CNH(유가증권))	0	0	0	0	0	0	0	0	0	3,554	0	3,55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9	0.00	
CNY(중국)	69,202	0	0	63,789	0	0	0	0	0	9,595	0	142,585
	36.74	0.00	0.00	33.87	0.00	0.00	0.00	0.00	0.00	5.09	0.00	
HKD(홍콩)	0	0	0	29,038	0	0	0	0	0	1,001	0	30,039
	0.00	0.00	0.00	15.42	0.00	0.00	0.00	0.00	0.00	0.53	0.00	
KRW(한국)	0	0	0	0	0	0	0	0	0	6,142	5,891	12,03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6	3.13	

USD(미국)	0	0	0	0	0	0	0	0	0	14	0	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합계	69,202	0	0	92,827	0	0	0	0	0	20,423	5,891	188,343
	36.74	0.00	0.00	49.29	0.00	0.00	0.00	0.00	0.00	10.84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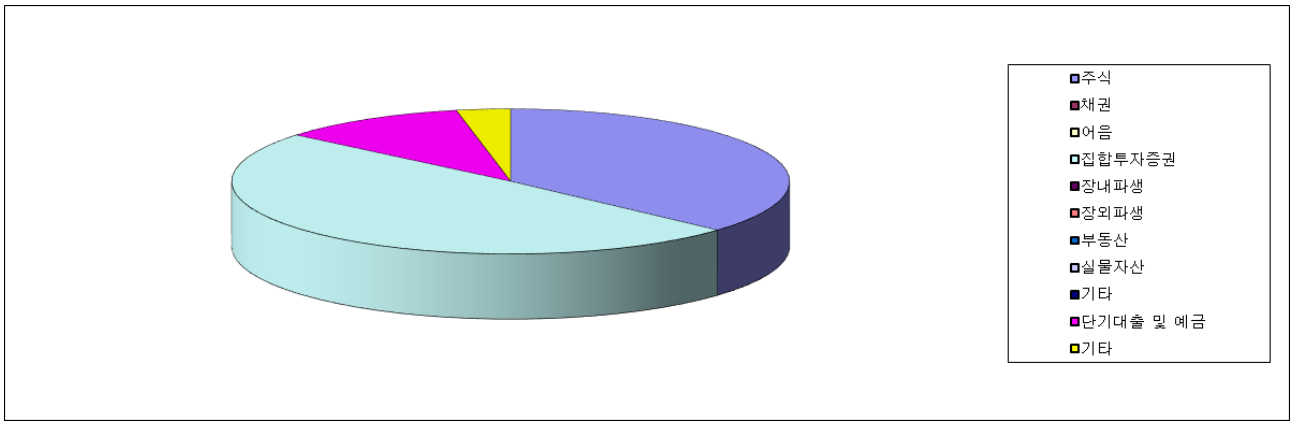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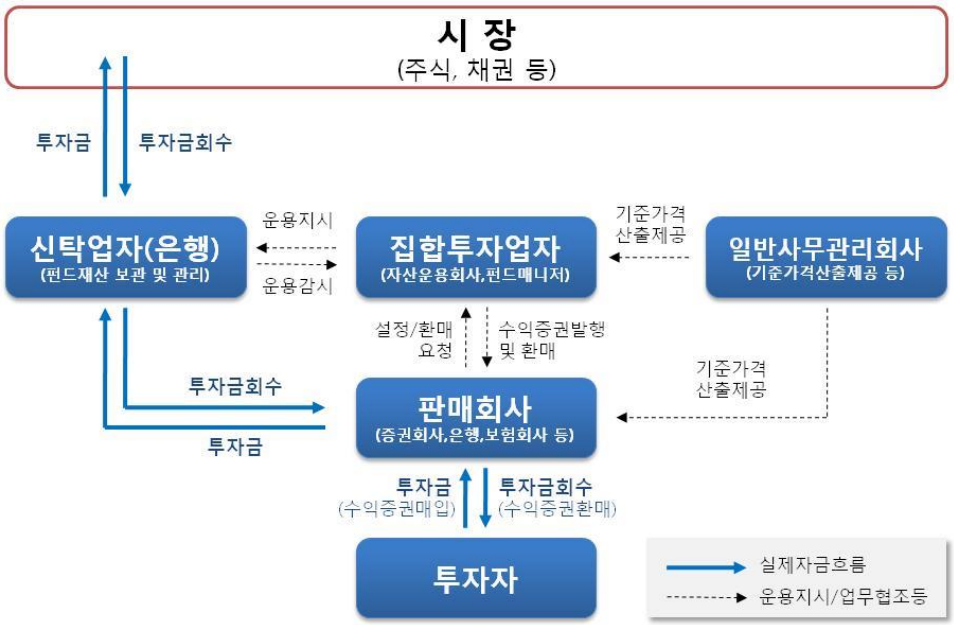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2조 6,718억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0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 해 관 계 인 현 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022.12.31	2021.12.31	항 목	2022.01.01 ~ 2022.12.31	2021.01.01 ~ 2021.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074	15,640	영업수익	371,345	461,604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12,424	104,336	영업비용	265,533	248,723
유가증권	3,391,878	3,022,347	영업이익	105,812	212,88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8,334	27,062	지분법손익	443,882	277,892
기타자산	7,068	9,736	영업외수익	1,232	656
자산총계	3,561,778	3,179,121	영업외비용	2,546	2,366
예수부채	10,855	786	법인세차감전이익	548,380	489,063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606,564	579,387	당기순이익	526,184	396,501
기타부채	272,530	340,954			
부채총합	889,949	921,126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246,633	246,633			
기타포탈손익누계	-118,706	-9,702			
이익잉여금	2,476,043	1,953,202			
자본총계	2,671,831	2,257,993			

라. 운용자산 규모(2023.12.31 현재 / 단위: 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단기금융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혼합자산	PEF	투자일임기타	총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41,037	3,812	4,337	34,566	83,752	3,859	20,956	10,835	38,601	6,400	6,933	790	-	172,126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50 씨티뱅크센터 ☏ 02- 3455-2114, 1588-5754
홈 페 이 지 참 조	www.citibank.co.kr
연 혁	1981년 9월 17일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 소 및 연 락 처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홈 페 이 지 참 조	fs.miraeasset.co.kr
연 혁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홈 페 이 지 참 조	www.koreaap.com

회 사 명	나이스피앤아이㈜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홈 페 이 지 참 조	www.nicepni.co.kr

회 사 명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홈 페 이 지 참 조	www.bond.co.kr

회 사 명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 페 이 지 참 조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른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가.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나. 가목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매매대가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DISCLAIMER]

CSI300 Index is calculated by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 (CSI). CSI does not make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to any of their customers or anyone else regarding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any data related to the Index. All information is provid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CSI accepts no liability for any errors or any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information"

[알림]

CSI300 지수는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CSI)에 의해 산출됩니다. CSI는 지수와 관련된 자료의 정확도 또는 완성도에 대하여 고객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보장, 표현 또는 암시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CSI는 이 정보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보수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